

제832호

무주 공보

2026. 9. 30.(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 3
- 「무주군 청령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조례 공포 9
-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12
-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14
-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 공포 21
-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31
-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39
-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43
-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53
-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55
-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60
-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64
-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70
-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77
-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81
-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87
-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90
-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93
-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 공포 100
-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4

○ 「무주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12
○ 「무주군 고령자 주거생활 불편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19
○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5
○ 「무주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32
○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8
○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8
○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2
○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4
○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3

무주군 조례 제2837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무주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무주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전파와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제4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 국장

나. 화학물질 업무 관련(환경·안전·보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무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나. 화학, 환경, 안전,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2.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고대응계획
3. 무주군에서 지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4. 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5.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제13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배출저감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행정 및 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조례 제2838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조례 제2839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가급적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을 “위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촉직 위원에 임기는 <u>가급 적 2년</u>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u>다만,</u> <u>위원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 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② ----- <u>3년</u> -- ----- ----- . <u><단서</u> <u>삭제></u>
제8조(위원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의 구성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군수는 한 위원을 3개의 위 원회에 초과하여 <u>위촉하거나,</u> <u>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u> <u>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u> <u>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u> <u>지 아니한다.</u>	③ ----- ----- <u>위촉</u>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무주군 조례 제2840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구성·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복지 증진

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르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위촉위원의 해촉,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절차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아동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4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당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때

3. 제13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아동위원의 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및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전담공무원 배치)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 소속 공무원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20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할

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아동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에 따라 수립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조례 제2841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친화적 목재문화의 생활화와 탄소중립적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이하 “목재친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목재친화센터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목재친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재교육 및 목공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3. 목재문화 활성화 및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목재문화행사
4. 목재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
5. 목재 및 목재이용제품의 전시 및 제작·판매
6. 지역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
7. 그 밖에 목재이용 및 목재체험에 관한 활동

제4조(시설) 목재친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목공체험장(다목적 강의실), 목재실내놀이터
2. 회의실 등 목재친화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제5조(휴관일) ① 목재친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목재친화센터 게시판 및 무주군 누리집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목재친화센터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목공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실비(實費) 범위에서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 절차) ① 목재친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목적 강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전날까지 군수(제13조에 따라 목재친화센터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체험료를 별표 1의 단체 체험료로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체험료 및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센터의 사정(점검, 보수, 운영상 필요 등)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체험 또는 이용이 시작된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장 거부 또는 퇴장 명령을 받아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목재친화센터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장 거부 및 퇴장은 각 호의 행위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목재친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재친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운영방법) ① 목재친화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목재친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4조(부대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강사) ① 군수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작품 1점당)

구분	체험시간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상급 (기계작업)	3시간 기준	3,000	2,000	체험시간 경과 시 체험료의 50% 추가 부담
중급 (공구작업)	3시간 기준	2,000	1,500	
초급 (단순작업)	3시간 기준	1,000	500	

*재료비는 초급·중급·상급과정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별도 부과

[비고]

1. 정규프로그램 외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은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체험 참가자를 인솔하는 사람(부모를 포함한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음
4. 체험장 내에서의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금지함
5. 별표 3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게는 개인 체험료 대신 단체 체험료를 적용함

[별표 2]

목재친화센터 시설 이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다목적 강의실 (1실)	4시간	50,000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적용
	1일(8시간)	80,000	
목재실내놀이터 (1인)	10:00~11:30 13:30~15:00 15:30~17:00	회당 5,000 (보호자 1,000)	1일 3회, 1회당 90분

[비고]

- 다목적 강의실의 이용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이용료를 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10,000원의 추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목적 강의실 이용료 감경 기준
 - 5일 이상 이용: 20퍼센트 감경
 - 10일 이상 이용: 30퍼센트 감경
 - 20일 이상 이용: 50퍼센트 감경
- 목재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경 기준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000원 감경
 - 20인 이상 단체: 1,000원 감경
- 다목적 강의실은 목재 관련 교육, 문화행사 및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함

[별표 3]

목공체험 프로그램 감경 대상자(제10조제1항 관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7.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이용 시설	
	다목적 강의실	
	이용인원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목재친화센터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무주군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귀하

무주군 조례 제2842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무주군”으로, “군 설천면”을 “무주
군 설천면”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목재펠릿생산”을 “목재펠릿 생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영·관리를”을 “운영·관리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를 “따라 확보
한 원료가”로, “해당할 때에 예산범위에서 매입하여 원료를 확보”를 “해당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료를 매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내 무
주국유림관리소”를 “무주국유림관리소”로, “MOU를 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숲가꾸기 산물을 확보한”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내 산림사업의 벌채 산물에 대하여 산림사업 신고 시 군과 일정 물량

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8조제1항 중 “생산된 제품”을 “제품 생산”으로, “가격을 군”을 “가격을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으로,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를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요되는 예산은”을 “필요한 경비는”으로, “군비 등에서”를 “군의 예산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는 「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관리위탁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운영·관리의 일부”로, “관리위탁운영 할”을 “위탁할”로, “관리위탁에 관한”을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장”을 “목재펠릿 생산시설”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실적이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장운영능력”을 “공장 운영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위탁 운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만료후”를 “만료 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비 지원)”을 “(운영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재의 전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비용을 그 지원 목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목재펠릿의 보급 확대와 보급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보급농가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목재펠릿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격차액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가격차액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가격차액을 지급한다.

제13조의 제목 “(관리위탁운영의 취소)”를 “(관리위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탁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장의”를 “공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위탁운영”을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하여 손실을 보상한다.

제14조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훼손하고 잃어버렸을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② “보급농가”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중 <u>군</u>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② ----- <u>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u> -----.
제3조(위치) <u>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u> 목재펠릿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은 <u>군</u>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에 둔다.	제3조(위치) <u>무주군</u> ----- ----- <u>무주군 설천면</u> -----.
제4조(시설) 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목재펠릿 생산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4조(시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목재펠릿생산에</u> 필요한 시설 등	5. ----- <u>목재펠릿 생산</u> ----- -----
제6조(운영·관리) ① (생략)	제6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공장의 <u>운영·관리를</u>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 <u>운영·관리를</u> -----.
제7조(원료확보 방안) ① (생략)	제7조(원료확보 방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u>따른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u>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 때</u> 에 <u>예산범위에서 매입하여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u>	② ----- <u>따라 확보한 원료가</u> ----- ----- <u>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료를 매입</u> -----.
1. <u>군내 무주국유림관리소</u> 및	1. <u>무주국유림관리소</u> -----

인근 시·군과 MOU를 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숲가꾸
기 산물을 확보한 경우

2. 군내 산림사업 벌채량에 대
하여 산림사업 신고시 사전
군에 일정납품 물량을 계약체
결 통해 확보한 경우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① 군수는 생산된 제품에 투자
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 및 이
윤 등을 감안하여 제품의 가격
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
시한다.

② (생 략)

제9조(예산 등) ① 공장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장
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및
군비 등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장운영에 필요한 예산·결
산·재무회계에 대해서는 「무
주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관리위탁운영) ① 제6조에
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장의 효

----- 업무협약을 체
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2. 군내 산림사업의 벌채 산물
에 대하여 산림사업 신고 시
군과 일정 물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8조(제품의 가격결정 및 공급)

① ----- 제품 생산-----

----- 가격
을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 --- 식
품산업정책심의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 등) ① -----
----- 필요한 경비는 -----

군의 예산 등으로 -----
-----.

② 공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는 「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

제10조(관리위탁) ① -----

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장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
이 있는 사람

2. (생략)

3. 그 밖에 공장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관리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 운영·관리의

----- 일부 -----

--- 위탁할 -----

-- 관리위탁 -----

-----.

1. 목재펠릿 생산시설--- 실적
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3. ----- 공장 운영능력-----

② 위탁기간-----

----- 만료 후---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
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
재의 전부 또는 ----.

② 군수는 목재펠릿의 보급 확대와 보급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보급농가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목재펠릿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8조제1항

<신 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운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운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에 따른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할인 판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격차액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가격차액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가격차액을 지급한다.

④ -----
--- 비용을 그 지원 목적-----
-----.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① -----

관리위탁-----
--.

1. (현행과 같음)
2. 공장 -----

3. ----- 관리위탁-----

--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u>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u> <u>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u> <u>용하여 손실을 보상한다.</u>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 는 군수의 <u>승인없이</u>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 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 ----- <u>승인 없이</u> ----- ----- -----.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시설물 및 장비를 <u>훼손하고 잃어버렸을</u> <u>때에는</u>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 ----- ----- ----- <u>훼손하거나 분실한 경</u> <u>우</u> ----- -----. -----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u>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u> <u>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u> <u>한다.</u>	<u><삭 제></u>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u>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u> <u>한다.</u>	<u><삭 제></u>

무주군 조례 제2843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용수

구역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개발·이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5.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조작 및 유지·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수원의 활용
2. 농촌용수의 공급 및 운영 방안
3.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 이용·관리 방안

③ 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전문검사

기관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2. 시설물 대장에 따라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조사, 조사 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

② 군수는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은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용수의 공급 및 사용) 군수는 농촌용수 목적 외의 용수를 공급하거나 용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미치는 영향
2. 농촌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3. 농촌환경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용 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무주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조례 제2844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수리계”란 규약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부터 1:25,000까지의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의 임원을 두며, 그 선출방법·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

장에게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그 전년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 및 감가상각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수리계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수리계명칭									
계 원 수									
구역면적		m ²							
수혜면적		m ²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형태		소재지		수혜면적(m ²)		비 고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무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부터 1:25,000까지의 지도)							수 수 료		
							없 음		
※ 시설형태란은 주요시설, 부속시설, 보조수리시설로 구분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 등록부(제5조 관련)

번호	수리계 명칭	수리 계장	소재지	시설 명칭	설치 연월일	수혜 면적 (㎡)	계원수 (인)	등록 일자	비고

수리계 등록증

수리계 명칭:

성명(수리계장):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구역면적: m^2

수혜면적: m^2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서(제15조 관련)

수리계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수 신:		발 신:		수리계장 (인)	
제 목: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 현황					
등록일자	계원수 (명)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m ²)	수혜면적 (m ²)	수리계장 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 (m ²)	부과 계원수(명)	부과 내역 현금(원)	징수액 (원)	징수율 (%)	감가상각 충당금 잔액(원)

※ 경비 징수액 및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충당금 현황					
예산액(원)	결산액(원)	결산액 증개.보수비			
		보조(원)	차입금(원)	자부담(원)	계(원)

감가상각충당금			
전년 이월(원)	당년 적립액(원)	당년 사용액(원)	충당금 잔액(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	정비 부문	경비소요액			비고
		현금(원)	기타(원)	계(원)	

무주군 조례 제2845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 사용허가, 점용허가 등 적법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조례 제2846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를 “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범사업”을 “농촌지도 시범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지원사업

제9조제1항 중 “농업인·농업인학습단체·연구회·소비자”를 “농업인·농업인학습단체·품목농업인연구회·소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회·영농조합법”을 “품목농업인연구회·영농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선정하고”를 “선정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곤충사육농가에게”를 “곤충사육 농가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 흥법」 제2조제3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사 업을 말한다.		4. -----이란 「농촌진 흥법」 제2조제3호-----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반딧불이 보호 지원사업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 사업) 군수가 농업경영체의 경 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시범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범사업)	----- ----- ----- ----- ----- 농촌지도 시범사업-----.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5조(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식생		제5조(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식생		

활개선 사업) 군수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9조(현장교육 등 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 습득,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인학습단체·연구회·소비자의 현장교육 및 기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연구회·영농조합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장

4.·5. (생략)

③ 군수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활개선 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지원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현장교육 등 지원사업) ①

----- 농업인·농업인학습단체·품목농업인연구회·소비자-----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품목농업인연구회·영농조합법-----

4.·5. (현행과 같음)

③ -----

----- 지원할 -----
-----.

<삭제>

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군수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한 활동지원과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반딧불이 보호사업 지원) 군수는 반딧불이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농가에게 친환경 농자재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사육농가에게 곤충사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와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우수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 -----

----- 선정하여 -----
-----.

<삭 제>

제12조(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 곤충사육 농가에 -----

-----.

<삭 제>

무주군 조례 제2847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군수의 책무)”를 “(군수 등의 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 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5조에 따른”을 “법 제15조제1항 및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으로,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

반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을 “「무주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 ----- ----- 따라 ----- ----- -----.
제3조(군수의 책무) ①·② (생략)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 ----- 5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생략)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현행과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생략)

제8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같음)

② -----

----- 법 제15조제1항
및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무주군 ---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
-----.

③ -----

-----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

<삭제>

<삭제>

무주군 조례 제2848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부학장·교학부장·행정담당자 각 1명과 학과별 학과장 1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하며, 교육생 의견수렴, 교육 진행 지원 및 제반업무 협조 등 각 학과의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교육기간 및 횟수) 교육기간 및 교육횟수는 부학장이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1조(교육과정) 부학장은 교육 수요 및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12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입학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학 절차 등)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입학신청서

2. 사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천재지변·질병·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 교육과정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출석 및 졸업) ① 교육생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 요건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5조(결석 등) ① 교육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4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퇴실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6조(출석 인정)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5. 경조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가. 본인 결혼: 7일

나. 그 밖의 경조사: 3일

제17조(상벌) ① 교육생에 대한 포상은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부학장이 결정하고, 징계는 교학부장의 제안으로 학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수강정지 또는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생자치회) 대학에는 각 전공 교육과정별 대표를 포함한 교육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생자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9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재비 및 현장실습비 등 일부 교육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중

인 교육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조례 제2849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와 관리”로, “규정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길 29-27에 둔다.

제3조제1호 중 “이용 되는”을 “이용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특산물가공”을 “농·특산물 가공”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한다.

제8조 중 “위원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취 할”을 “청취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반환 한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징수할수”를 “징수할 수”로 한다.

제20조 중 “위탁 받”을 “위탁받”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할수”를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치 할”을 “조치할”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와 관리 ----- ----- 규정함-----
제2조(위치)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길 29-27에 둔다.	제2조(설치) 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 설>	② 가공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길 29-2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제3조(정의) ----- ----- 1. -----

출하 등에 이용 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생략)

제4조(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제6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 이용되는 -----

-----.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농·특산물가

공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

----- 무주군 농산물중

합가공센터 -----

-----.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
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
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
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정기회의
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

----- . <후단 삭제>
제>

1. 2.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 연임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
----- 위
원장-----

-----.

제9조(회의의 운영) ① -----

----- 1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청

<u>취</u>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u>반환</u> 한다. 1. 2. (생략) 제18조(위탁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u>징수할</u> 수 있다. 제2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u>위탁</u> 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 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u>할</u>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u>조치</u>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u>취</u>할 -----. 제14조(사용료 반환) ----- ----- -----. -- <u>반환</u>한다. 1. 2.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료) ----- ----- ----- <u>징수할</u> 수 ---. 제20조(권리양도 제한) ----- ----- <u>위탁</u>받----- ----- -----. 제22조(지도·감독) ① ----- ----- ----- ----- ----- <u>할</u> 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조치</u>할 ----- ----- -----
--	---

를 주어야 한다. <u>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u> <u>으로 정할 수 있다.</u>	-----. <u><삭 제></u>
---	---

무주군 조례 제2850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설치하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무주군”을 “무주군”으로, “둔다”를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한다) 또는 단장이”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

호 중 “단체 등”을 “단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예찰·방제 업무”를 “예찰·방제”로, “실시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u>설치하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u> (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u>둔다</u> .	제2조(설치) ----- ----- ----- <u>무주군</u> ----- ----- ----- ----- <u>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u> (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u>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전비용 등의 집행</u> 5. (생 략) 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3조(임무)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 --- <u>한다</u>)가 ----- ----- -----
제4조(구성) ① ~ ④ (생 략)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u>선출한</u>	제4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호선(互</u>

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략)

4.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 ① (생략)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選)한다.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단체

제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

③ -----

----- 노력하여야 --.

제8조(교육) ----- 예찰·방제 -----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무주군 조례 제2851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종균배양센터”란 천마종균을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종균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군 천마재배 농가에게 우량 종균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을 조성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배양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천마종균배양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천마종균의 배양·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천마종균을 배양·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마종균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
3. 천마종균 재배 실패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시험재배 목적의 이용자 외의 자에게 천마종균을 공급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마종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천마재배 영농조합(작목반) 대표 1명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그 밖에 천마종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배양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신청 및 공급) ① 천마종균은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외의 자가 천마종균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할 수 있다.

② 천마종균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급 가능 여부와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기준과 제한) ① 천마종균은 이용자 가구당 1ha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천마종균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 관할구역 밖에서 사용하거나 그 밖에 공급대상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공급가격 및 대금 납부) ① 천마종균의 공급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천마종균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공급가격을 납부한 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이 작목반 및 지역농가의 시범육성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무주
군 천마종군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생산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생산수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조례 제2852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말한다.

2.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태 조사를 통하여 반딧불이가 집단 서식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서식지”란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을 말한다.

제3조(서식지 보호) ① 군수와 군민은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서식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이용 및 개발

2. 서식지의 오염 및 훼손 방지와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노력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3. 서식지 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감시·복원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교란 동식물 관리 사업

5. 환경오염 예방 등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반딧불이 보호·연구·교육·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딧불이 서식 현황 및 생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조례 제2853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는 반딧불이의 보전·증식 및 생태교육을 위하여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에 둔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딧불이 보전·증식에 관한 연구
2.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 지원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는 소관 부서장이 총괄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반딧불이 증식 및 방사
4. 그 밖에 연구소 관련 업무

② 연구소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은 무주군민을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딧불이 생태교육은 연중 실시하되,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연구소는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시에만 개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연구소 이용자는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참여 시 운영요원의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무주군수는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물 또는 생물자원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조례 제2854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일관성있게”를 “일관성 있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3제1항”을 “제23조의6제1항”으로, “지역먹거리계획”을 “무주군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3제2항”을 “법 제23조의6제2항”으로,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무주군 먹거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및 제2호 중 “지역먹거리계획”을 각각 “먹거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및”을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지역먹거리”를 “먹거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3조의3제3항”을 “법 제23조의6제3항”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3제3항”을 “법 제23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통합물류 허브 조성”을 “통합물류 체계 구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먹거리 군민 양성”을 “군민 먹거리”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단체 급식”을 “단체급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무주군 먹거리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있게 통합·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5. (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있게 통합·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5. (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있게 통합·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있게 통합·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있게 통합·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 4.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	제6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략)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 제23조의6제1항-----

----- 무주군 먹거리계획
(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법 제23조의6제2항-----

---- 무주군 먹거리위원회----

-----.

1. 먹거리계획-----

2. 먹거리계획-----

3. (현행과 같음)

4.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의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먹거리계획 -----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 마. (생략) 바.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아. (생략) <u>제14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u> ① 군수는 <u>법 제23조의3제3항</u>에 따라 <u>먹거리통합지원센터</u>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u>법 제23조의3제3항</u>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 공공 조달에 필요한 <u>통합물류 허브 조성</u> 및 프로그램 운영 2. (생략) 3. <u>먹거리</u> <u>군민</u> <u>양성</u> 교육과 <u>도농교류</u> <u>활성화</u>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설치 <u>제1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u> 군수는 <u>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u>에 <u>먹거리</u>	3.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통합지원센터</u>----- ----- 사.·아. (현행과 같음) <u>제14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u> ① ----- <u>법 제23조의6제3항</u>----- <u>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u>-----. ② ----- <u>법 제23조의6제3항</u> ----- ----- ----- -----. 1. ----- -- <u>통합물류체계 구축</u> ----- ----- 2. (현행과 같음) 3. <u>군민 먹거리</u> ----- ----- ----- <u>제15조(통합지원센터의 위탁)</u> 군수는 <u>통합지원센터</u>를 <u>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u>
---	--

<u>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u>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17조(관계시장의 확보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생활권 직매장, <u>단체 급식</u> 및 지역 식당 등으로 지역 소비시장을 세분화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관계시장의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단체 급식</u> ----- ----- -----. ③ (현행과 같음)

무주군 조례 제2855호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9월 30일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선하고 필수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
한다.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이란 식품 사막화 지역에 차량, 이동 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사업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관련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식료품 배송 체계 구축
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동체 육성)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7

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41호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직거래를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사용허가의 대상이나 현 조례에는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정의, 판매장의 기능 등 재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시판매장의 정의(안 제2조)
-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제9조)
- 다. 관련 법에 의한 관리·운영 방안(안 제10조)
- 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 전자우편: gywls1214@korea.kr
- 팩스 : 063-320-28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전화: 063-320-2780, 팩스: 063-320-2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농·특산물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행복장터”란 전시판매장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농산물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전시판매장의 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의 전시·홍보 및 판매

2.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2. 군에서 생산되거나 군의 지역적 특성·상징성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민속공예품·수예품 등 지역특산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전시판매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농·특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시판매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시판매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관리·운영) ①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사용하려는 자로서,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행복장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 및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적정한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를 검사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품목, 매출액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48호

「무주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무주군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 및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료 이용 대상 및 구간 (안 제3조)
- 나. 무료 이용 사업 및 지원 (안 제4조)
- 다. 협약의 체결 (안 제5조)
- 라. 무료 이용 지원금의 산정 (안 제6조)
- 마. 무료 이용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안 제7조)
- 바. 사후관리(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 전자우편: mendax@korea.kr
- 팩스: 063-320-23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전화:063-320-2361, 팩스: 063-320-23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 조례명 : 「무주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관할구역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이용객의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노선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2. “운송사업자”란 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무료 이용 지원금”이란 제3조에 따른 무료 이용에 대하여 무주군이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및 구간) ① 무료 이용 대상은 연령 및 거주

지에 관계없이 제2조제1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무료 이용 구간은 승차지와 하차지가 모두 무주군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으로 한다.

③ 무료 이용은 제5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무료 이용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대상 구간에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료 이용 사업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이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운송수입 감소분이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무료 이용 지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와 무료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무료 이용 지원금의 산정·청구 및 지급, 운행실적 확인, 협약의 변경·해지 및 그 밖에 무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운송사업자는 협약에 따른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운임·요금의 신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무료 이용 지원금의 산정) ①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중 노선형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무료 이용 지원금은 운송수입금, 이용객 수, 운행실적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군수는 무료 이용 지원금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외버스의 무료 이용 지원금은 승차지와 하차지가 모두 무주군 관할구역에 있는 실제 이용객 수와 해당 구간의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이용객의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에서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7조(무료 이용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무료 이용 지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료 이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무료 이용 실태 및 무료 이용 지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 이

용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고령자 주거생활 불편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고령자 주거생활 불편 해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주군 내 고령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택의 점검 및 소규모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협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전자우편: ksy2578@korea.kr
- 팩스: 063-320-22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민원봉사과(전화 063-320-2486, 팩스 063-320-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고령자 주거생활 불편 해소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고령자 주거생활 불편 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주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점검 및 소규모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 혼자 거주하는 세대
 2. 부부만 거주하는 세대로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70세 이상인 세대
 3. 70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만 거주하는 세대(70세 이상인 사람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대 구성은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3조(지원 범위 및 기준)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규모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일러의 점검 및 간단한 부품 교체·수리
2. 전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교체·수리
3. 수도꼭지 및 문손잡이 등의 교체·수리

4. 그 밖에 주거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의 지원 한도는 세대별 1회당 2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수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시설 전체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수리로 인하여 시설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3. 임대인,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영업시설,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 빈집에 대한 수리인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 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과 자격·면허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실시) ① 군수는 지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일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수리가 실시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 보일러, 수도 및 주택 수리 등 관련 분야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가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비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지원 신청, 지원 여부 및 내용, 수리 결과와 재료비 지원 내역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의 확대 및 자격완화(안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 나. 중복지원의 제한 및 최소·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호)
-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정비 및 조문 이동(안 제8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30.~ 10. 20.(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무주군평생교육원
- 전자우편: choisung@korea.kr
- 팩스: 063-320-2075

5.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인구활력과 평생교육팀(전화: 063-320-2251, 팩스: 063-320-2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등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생 등”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과 대학원생

을 포함한다)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2.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3.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무주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무주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대학생 등이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총 휴학기간이 6학기 이하일 것. 이 경우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총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이자 지원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이자 전액을 지원 받은 대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지원한 금액 중 부정하게 지원받았거나 중복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신청의 접수, 학자금대출 내역 및 이자액의 확인, 지원금 지급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
 2. 지원대상의 범위, 세부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50호

「무주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주군수

「무주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안 제5조)
- 마. 사업 추진(안 제6조)
- 바.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 전자우편 : kos6852@korea.kr
- 팩스 : 063-320-2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전화 063-320-2626, 팩스 063-320-2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무주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주변 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무주군 누리집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2. 아동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의 식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판·조명 등 시설물 설치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관할 교육지원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아동보호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51호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 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 다. 친환경차 구매 및 보급 관련 조문 정비(안 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환경과

2) 전자우편 : kkangsj08@korea.kr

3) 팩스 : 063-320-2339

4) 그 밖의 문의 : 무주군청 환경과(063-320-2334)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무주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무주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무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여 무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무주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 및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무주군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후위기 적응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무주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무주군의회 의원
3. 환경·기후위기 대응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및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기자동차등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등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군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군수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 맞춤형 교재의 개발·보급 및 대상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녹색생활의 실천

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무주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주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무주군 공고 제 2026-1056호

「무주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종전 높이 10미터를 17미터로 변경

-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제한 특례 신설
 -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3. 의견 제출

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320-2472, FAX 063-320-2248, 전자우편 : jswookr@korea.kr)

4. 붙임

가. 의견서 1부

나.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군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군”을 “무주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3호 중 “종사중”을 “종사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로, “5명부터 7명까지”를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으로, “사람으로”를 “사람으로서”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질의민원”을 “위원장은 질의민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위원장은”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2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에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4호 중 “제35조의2”를 “제35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일조”를 “일조 등의”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를 “건축물 각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층”을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으로, “8미터이하”를 “8미터 이하”로, “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2. 높이 10미터를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제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

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를 “법 제77조의15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군 건축위원회</u>	제2장 <u>건축위원회</u>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군 건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 ----- ----- ----- <u>무주군</u> ----- -----.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u><신 설></u>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u>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u> <u>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u> <u>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u> <u>여 무주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u> <u>(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u> <u>한다)를 둘 수 있다.</u>
<u>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u> <u>축민원 전문위원회는</u>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부터 7명까지</u>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u>사람으</u> <u>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을</u> 위원으로 임명 한다.	<u>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u> ----- ----- ----- <u>5명 이상 7명 이하의</u> <u>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u> --- ----- <u>사람으</u> <u>로서</u> -- <u>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u> <u>명하거나 위촉한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3. -----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4. (생략)

<신설>

<신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
며 의장이 된다.

③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를 제
출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
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긴급
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생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

----- 종사 중-----
--.

4. (현행과 같음)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
라 한다)은 건축민원전문위원
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
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제>

⑤ 위원장은 질의민원 -----
----- 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에는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 연임할 -----

다.

<신 설>

--.

제10조의3(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위원회에 영 제5조의6
제1항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에
서 심의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
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
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그 전
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
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중에
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u>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u>⑥ 공무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⑦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법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u>제35조의2</u>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생략)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제35조</u> ----- -----. 5.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③ 삭제

④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⑥ (생략)

<신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제1항-----

-- 일조 등의 -----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
-----.

1. (현행과 같음)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3. -----
-- 17미터--- 건축물 각 부분
--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8미터 이하-----
----- 같은 조 제1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제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
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
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
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
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
 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
 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
 박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
 보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생 략)
2.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
 센트
3. ~ 5. (생 략)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u><신 설></u> <u>제8장 보칙</u>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u>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u>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 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한 다. ② ~ ⑤ (생 략) 제40조(결합건축) <u>법 제77조의15</u> <u>제1항 단서</u>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2.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8장 보칙</u> <u><삭 제></u>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u>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결합건축) <u>법 제77조의15</u> <u>제3항</u>----- -----. 1. 2. (현행과 같음)
--	---

무주군 공고 제2026-1054호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안 제1조의2, 제28조)
- 나. 상위법령과 형식 및 용어 통일성을 위한 정비 (안 제20조의2, 제27조)
- 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가능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절차 명확화(안 제22조의2)
- 마. 대부 규정의 준용 범위 구체화(안 제23조)
- 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의견을 반영하여 공장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건 완화(안 제28조)
- 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

사의 등급 구분 폐지 및 등급이 포함된 문구를 삭제하고,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용대상자, 사용료 부과제외 기준, 관사 운영비 부담 등을 정비(안 제50조~제57조)

아. 뜻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자우편: nanhui633@korea.kr
- 전화: 063-320-2275
- 팩스: 063-320-2289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용을 정하여”를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로 한다.

제9조 중 “비능률적”을 “비효율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 .하천”을 “도로 · 하천”으로, “총괄 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그 재산은 행

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기부 채납된”을 “기부채납된”으로 한다.

제18조 중 “대처하도록”을 “대응하도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허가 하려”를 “사용허가하려”로,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로,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를 “대한 연고권을”로, “없음을 허가시에 분명히 하여야”를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를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하는 경우 심의회”를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려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로, “결정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군금고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업 수익”을 “영업수익”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23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 “(대부료율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사용료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제5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대부”는 “사용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5조제1항 중 “게을리하여”를 “소홀히 하여”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의 품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및 칫소 육성 특화사업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3. 군 공유임야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산불보호·임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임산물 및 양봉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려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제1항 중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를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로, “재산평정가격의”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 또는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및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평정가격의”를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평정가격의”를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을 “토석”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을 “사용허가되거나 대부된 토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을 “전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으로, “하나의 기준에 적합”을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활용촉진”을 “활용 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로, “예금이자”를 “발생하는 예금이자”로,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상당하는”으로,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를 “역산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34조 중 “해당 사용허”를 “사용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를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로, “대부료 등보다”를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최초연도”를 “최초 연도”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를 “따라 매각한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으로,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를 “필요가 있어 재산의 인도일이나”로, “계약시에 따”를 “계약할 때 따”로,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경우 또는 재산의 인도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에 따르”를 “수의계약으로 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초과 하더라도”를 “초과하더라도”로 한다.

제41조 중 “신탁할 경우에 있어서”를 “신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 중 “산지 자원화”를 “산림자원화”로 한다.

제43조 중 “처분 하되”를 “처분하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 위험, 신설 기관, 임차, 노후, 협소 및 위치 부적정의 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사회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고유한 전통미를 살린 외형으로 설계

제50조 중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군 소속공무원”을 “장에서 “관사”란 군 소속 직원”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군이”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군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
2. 군 관할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
3. 시설의 보호·감시 또는 비상근무 등을 위하여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사의 위치·용도 및 직무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사용허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관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사용책임)”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호 및 제2호 중 “훼손방지”를 각각 “훼손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절약과”를 “절약 및”으로, “할 제공과금”을 “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한다.

3. 청결 유지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군수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사용자 현황 등을 기록한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56조제2호 중 “재산유지 관리비”를 “재산 유지·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부과 제외)”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제57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중 “등재관리”를 “등재·관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경우에는 사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재산가액”을 “하여 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원”을 “인적사항”으로 한다.

제65조 중 “군수는”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8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 대부료 및 토석채취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사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u>내용을 정하여</u> 무주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 ----- ----- <u>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 ----- -----.
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u>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u>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u>공</u>	제8조(실태조사) ① ----- ----- ----- <u>실</u>

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 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집단화) -----
----- 비효율적-----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도로·하천 -----

----- 총괄재산관리관-----.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 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그 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위-----

----- 기부채납된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 및 처분) -----

----- 대응하도록 -----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가하러-----
----- 검토하여
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게 ----- 대
한 연고권을 -----
--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

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
호-----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의 품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3. (생략)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 하고자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

2. 3. (현행과 같음)

4. -----
-----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하려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
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
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
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
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
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
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
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대부료율 등의 준용) 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사
용료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1
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제5호는 준
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8
조 및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대부”는 “사용허가”로, “대부
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 소홀히 하여 -----

----- .

② · ③ (생 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의 품목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및 최소 육성특화사업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3. 군 공유임야에서 산림병해충예찰·산불보호·임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임산물 및 양봉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

· 판매하려는 경우로서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대부료율) ① -----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 재산 평정가격의 연 -----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 또는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및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 재산 평정가격의 연 -----.

1. 2. (현행과 같음)

③ ----- 재산 평정가격의 연 -----.

1. 2.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재산 평정가격

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5. (생략)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8. (생략)

⑥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

의 연 --. -----

----- 재산 평

정가격의 연 -----

-----.

⑤ -----

----- 재산 평정가격의

연 -----.

1. ~ 5. (현행과 같음)

6. ---- 30명 -----

----- 30퍼센트 -----

7.·8.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

----- 사용허가되거나 대부된

토지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

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에 따른 사용
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4조제3
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당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
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
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
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
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
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
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
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

-----.

제33조(전세금 납부에 따른 사용
허가 및 대부) ① -----

전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허
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
----- 하나에
해당-----.

1. (현행과 같음)
2. -----
----- 활용 촉진-----
-----.
3. -----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
는 -----
4. 그 밖에 군수가 전세금을 받
는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재산

② ----- 1년 만기
정기예금에 -----
-- 발생하는 예금이자 -----
----- 사용
료 또는 대부료에 상당하는 --

출한다.

③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 이 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

--- 역산하여 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사용허가-----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
-----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최초 연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관

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4. (생략)

④ ⑤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

리·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매각한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
----- 필요가 있어 재산의 인도일이나 -----
----- 계약할 때 따-----
-- 경우 또는 재산의 인도일-----

3. 4.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수의계약으로 하-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에는 3천제곱미터를 <u>초과 하 더라도</u> 제3호의 매각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7. · 8. (생략) ② (생략)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u>신탁할 경우에 있어서</u>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 리신탁 ·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 지신탁(임대형 · 분양형 · 혼합 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 는 <u>산지 자원화</u>와 관광산업 육 성에 필요한 밀원수 · 특용수 · 약용수 등을 위주로 조림하되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 종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u>초과하더 라도</u> ----- -----.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탁의 종류) ----- ----- <u>신탁하는 경우</u> ----- ----- ----- ----- -----. 제42조(공유임야관리) ----- -- <u>산림자원화</u>----- ----- ----- ----- -----. 제43조(처분의 제한) -----
---	---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할 때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
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
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
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
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 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경우에
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
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
형설계

3. ~ 7. (생략)

----- 처분하되 -----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고려
하여 -----

----- 수립·시
행-----.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
의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 위험,
신설 기관, 임차, 노후, 협소 및
위치 부적정의 순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의 상징성을 반영하
고 고유한 전통미를 살린 외
형으로 설계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군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
----- 장에서 “관사”란
군 소속 직원-----
----- 위하여 군이 -----
-----.

제51조(사용대상자)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군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
2. 군 관할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
3. 시설의 보호·감시 또는 비상근무 등을 위하여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사의 위치·용도 및 직무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사용할

제51조의2(관사의 면적) 1급 관사

의 면적은 251제곱미터로 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
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
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
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

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
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
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52조(사용허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관사를 사용하려
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사 사
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53조(사용자의 책임) 제52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사를 관리하
여야 한다.

1. ----- 훼손 방지
2. -----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 절약 및 --
----- 하는 각종
공과금-----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군

수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
호, 사용자 현황 등을 기록한 관
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
리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 -----.
1. <u>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u>	1. <u>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u>재산유지 관리비</u>	2. ----- -- <u>재산 유지·관리비</u>
3. <u>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u>	<삭 제>
4. <u>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의 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u>	<삭 제>
5. <u>공공요금(전기·수도·통신·가스요금 등). 다만, 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u>	<삭 제>
6. <u>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u>	<삭 제>

<u>관리비. 다만, 1급·2급 관사로 한정한다.</u>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u>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 2. <u>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3. <u>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u>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u>등재관리</u>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u>경우에는 사용자</u>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부과 제외) 군수는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58조(비품의 관리) ----- ----- ----- ----- ----- <u>등재·관리</u>-----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 ----- ---- <u>사용자</u>----- ----- -----.
---	--

②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② 삭 제

③ (생 략)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8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①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1. -----

----- 하여 재산가액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적사항 -----

-----.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

-----.

제68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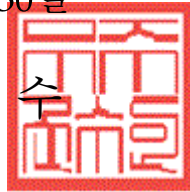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군 <u>인터넷 홈페이지</u>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 -- <u>누리집을</u> ----- ----- ----- ----- -----. ③ (현행과 같음)
--	--

무주군 공고 제2026-1053호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무주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특히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완료 후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여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제7조)
- 나. 불필요·중복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참여 기반 지원 강화

(안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체계 구축신설 (안 제16조~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
- 전자우편 : ahrako@korea.kr
- 팩스 : 063-320-28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촌활력과(전화 063-320-2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응하기”를 “응하게 하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0조제3항제3호”를 “영 제1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대하여 자료의”를 “자료”로, “협조”를 “필요한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으로 한다.

4.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와 주민 역량 강화 지원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의견제시”를 “의견 제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는 그 사용내역 및 정산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일부를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을 받고자 하는”을 “지원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무주군이 추진한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하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라 한다)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계획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이내에 있는 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공동이용시설의 조성·정비 및 운영·관리
5.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7.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u>그 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u> ----- --.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공동이용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 공동텃밭 등 주민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u>의한</u>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 ----- -- <u>따른</u>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제3조(<u>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 구성 · 운영</u>)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u>응하기</u> 위하여 무주군	제3조(<u>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u>) ① ----- ----- ----- ----- ---- <u>응하게 하기</u> -----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4조(위원회의 임기) 영 제1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
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
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
항-----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생략)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 설>

2. ~ 4. (생략)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6. · 7. (생략)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4.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와 주민 역량 강화 지원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삭 제>

5. · 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무주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무주군 주민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의 참여와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10명 이상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행하는 데 -----
----- 자료 -----
----- 필요한 협조-----.

⑥ -----

-----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

-----.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

----- 의견 제시-----

-----.

제8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는 그 사용내역 및 정산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제2조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
항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
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으
로 구성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
군수가 되고,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
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

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필
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
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재
생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융자하는 경
우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
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의 관리) 군
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사항의 개
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일부를 보조

② 지원을 받으려는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5조의2(설립지원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1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무주군이 추진한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하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라 한다)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계획

제17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의 “조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 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이내에 있는 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u>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4. 공동이용시설의 조성·정비 및 운영·관리</u> <u>5.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u> <u>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u> <u>7.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u> <u>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삭 제></u>
--	--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한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무 주 군 수



1. 개정이유

「무주군 군계획 조례」상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규정이 발전시설만 규제하고 있어 자원순환시설, 공장 등에 대해 세부적 규정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안 제16조의3)
- 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안 별표2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09. 30. ~ 2026. 10. 20.(20일간)

2) 규제심사 : 2026. 10월 중

3)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4) 부패영향평가 : 2026. 10월 중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 건설과 도시개발팀
- 전자우편 : gkocvw123@korea.kr
- 팩 스 : 063-320-2180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설과 도시개발팀(☎ 063-320-2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6조의3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물”이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및 해당 발전설비와 함께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자원순환시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활용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3) 공장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는 시설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시설 중 폐차장

5)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시설 중 봉안당 및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나. “도로”란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중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라.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5호 이상 위치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가 각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50m 이내인 경우 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본다.

마. “공공청사 및 학교”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바. “이격거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 최단 수평거리를 말한다.

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시설물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다.

2)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풍력 발전설비와 주택 또는 도로 간 이격거리는 해당 풍력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 발전설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주택 (5호 이상)	도로	주택 (5호 이상)
200m	200m	200m	500m	1,500m

3) 태양광 발전시설물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 시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물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인 경우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발전시설물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물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인 경우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하천, 소하천 구역을 벗어난 상류부에 발전시설 부지 조성 시 배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시설 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라) 발전시설물 부지 내 배수처리 계획 시 토사 배수로 설치하는 지양하고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하여 영구 침사지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발전시설물의 설치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발전시설물 부지 밖으로

빗물을 배수하려는 경우로서 구조물로 설치된 배수로나 하천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발전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분양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각 발전시설물의 부지면적을 합산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다) 옥상난간(벽) 안쪽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라) 태양광 발전설비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일 것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 부피는 수평투영면적에 높이를 곱한 값으로 산정할 것

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사) 전기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 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방음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2)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발전시설물 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이 격 거 리			
	도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거밀집지역	공공청사 및 학교
자원순환시설	1,000m	500m	500m	1,000m
공장	150m	1,000m	1,000m	1,000m
자동차관련시설	1,000m	500m	500m	500m
묘지관련시설	150m	150m	500m	150m

2) 개발행위의 특성 또는 지형 여건 등으로 제1)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개발행위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의 이격거리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1)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피해방지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나)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u>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기준</u>)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의3(<u>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u>)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및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